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31 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김성환 · 황명선

이수진 • 이원택 • 소병훈

김남희 • 이상식 • 정혜경

황운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헌법」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.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,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 사되어야 함.

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, 노태우 전 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,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 척,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 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.

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,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·외환 • 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내란·외환·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,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, 구성, 절차 등을 개정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 및 제2장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3조).
- 나.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, 위원은 대통령· 국회·헌법재판소가 각 3명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함(안 제10조 의2).
- 다. 사면 심사 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, 심사하는 사건에 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).
- 라. 사건 본인이 특별사면 및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 조, 제12조, 제14조).

##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제10조의2제1항 중 "법무부장관"을 "대통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, 3명은 헌법재 판소장이 지명하는 사람을,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⑧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사건에 범죄피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 중 "보고에"를 "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(出願)에"로 한다.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 중 "제12조제2항의"를 "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"로 한다. 제1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3조(사면 등의 대상) 사면, 감 제3조(사면 등의 대상) ---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----- 다만, 「형법」 호와 같다. <단서 신설> 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제2편제 1장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 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0조의2(사면심사위원회) ① 제 | 제10조의2(사면심사위원회) ① -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, 특 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 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 ----대통령-----면심사위원회를 둔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 ③ 제2항의 위원 중 3명은 국 고,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, 3명은 하거나 위촉하되, 공무원이 아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을,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 야 한다. 이 임명한다. ④ ~ ⑦ (생 략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⑧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 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1조(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)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 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 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 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 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 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특별사면 등의 제청) ①・ ② (생략)

<신 설>

제13조(검사의 의견 첨부) 검사가 제13조(검사의 의견 첨부) -----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 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

사:	건을	담딩	한	재	판년	부의	의	견
을	청취	하여	야	하ㅁ	月,	사건	]에	범
죄:	피해기	<b>아</b> 가	있님	=	경-	우 (	이들	의
의	견을	청취	하여	야	항	·다.		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 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네11조(특별사면 능 상신의 신경	( 5
	- —
	- —
	- —
	卫
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(出願)	케
	-
<u>.</u>	

- 제12조(특별사면 등의 제청) ①・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 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 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-----

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) 특별사면 또는 특정 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제14조(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
첨부서류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
는 그 출원서